

※ 민사소송법 정리 기본강의(제7판) 정오표 자료(p.89)

■ 심급관할

구분	1심	2심		3심
단독사건	소액사건 : 소가 1 ~ 3,000만 원 이하	2억 원 이하	지법합의부	대법원
	중액사건 : 소가 3,000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			
	고액사건 : 소가 1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	2억 원 초과	고등법원	
합의부사건	5억 원 초과			

■ 사물관할

종래 소송목적의 값(=소가)이 2억 원을 넘지 않으면(이하) 단독판사(단독재판부)가,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합의부가 담당하도록 하였던 것을 최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(시행일 2022.3.1.)을 개정하여 제1심 단독사건의 관할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. 다만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2억 원 초과의 경우로 유지하였다(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, 제4조).